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 9.9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1]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17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않는다.[2]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2] 이 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투자를 한 투자자의 제9.17조제2항에 따른 중재 청구의 제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 1.7 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만 그러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9.2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9.3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언급된 대우(최혜국 대우)는 정의나, 제 2 절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9.5조
일반적 대우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9.6조
손실 및 보상

1. 제9.12조제6항나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전쟁, 그 밖의 무력충돌, 혁명, 반란, 폭동, 내란, 소요 또는 그 밖의 그와 유사한 활동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과 관련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그 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 또는 어느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모든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다.

2.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전투 행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않았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과도한 지체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다.

3. 제1항은 제9.12조제6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9.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9.7조
수용 및 보상[3]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수용)할 수 없다.

[3] 제9.7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그리고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지 않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언급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지 않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그리고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제2절을 저해함이 없이,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당사국의 법상 그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하여 수용의 합법성 및 자신들의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유한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4장(지식재산권)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9.8 조
송금[4]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또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 9.6 조제 1 항과 제 9.6 조제 2 항 및 제 9.7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마는 제9.8조에 적용된다.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투자자가 그 당사국에 대한 모든 재정상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9.9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불합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역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유지, 사용, 향유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다음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5]

가. 제 1 항나호, 제 1 항다호, 제 1 항라호 및 제 1 항마호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또는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해야 한다.

나.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또는 취득,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

다.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명시된 요건, 또는

라.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의 경우,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규정된 요건

3. 제1항 및 제2항은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제1항 및 제2항은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GATT 제24조에 언급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5.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경쟁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는 경우 제1항바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이 조는 당사국이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 민간 당사자 간의 어떠한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9.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그 미만이 자국 국민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11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은

가. 투자자에 의하여 그 기업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소유”된다. 그리고

나. 투자자가 그 기업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기업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투자자에 의하여 “지배”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6]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9.3 조, 제 9.4 조, 제 9.9 조 또는 제 9.10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항다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투자 자유화 규정을 다루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제1항다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까지는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또는 제9.10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7]

3.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6]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다는 청구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다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비당사국과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채택할 때까지 제2절에 따른 중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5. 제9.3조 및 제9.4조는 제14장(지식재산권) 제1절(일반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그 절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6.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7. 각 당사국은 부속서 I과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 대하여 비합치 조치의 감소 또는 제거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수시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9.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요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되거나 등록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14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한쪽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에 대비하여 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의 투자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지불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가 그 투자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보유하였을 권리 또는 청구의 대위를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9.15조
예외

1. 제9.4조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나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다음에 기인한 대우, 선호 또는 특권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가 되는 미래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또는 미래의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 또는

라. 어느 한쪽 당사국과 제 3 국 간에 체결되고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서명된 투자 진흥 및 보호를 위한 모든 협정

2. 제1항나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제1항나호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용이 종료된다.

제9.16조
존속 및 종료

이 협정이 발효 중인 동안 이루어진 투자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들은 이 협정의 종료일 후 10년의 기간 동안 그러한 투자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적용대상투자의 설립이나 인수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후의 일반 국제법 규칙의 적용을 저해하지 않는다.

제9.17조
양자 간 투자 조약의 기간

1. 제2항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양자 간 투자 조약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권리 및 의무뿐 아니라 그 조약도 이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양자 간 투자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투자는 그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규칙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투자자는 양자 간 투자 조약이 발효 중이었던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양자 간 투자 조약에 규정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지 않는 한, 그 조약에 따른 중재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8조
협의 및 교섭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9.19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위반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청구의 한도는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의 결과로 투자자에게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의 금전적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4. 의사통보를 제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다음에 따라 제1항에 언급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

5.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3 조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규칙에 언급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제4항에 따라 적용 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7.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이름,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9.20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9.21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을 초과하여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나. 제9.19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중재통보에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가 수반되는 경우, 그리고

다.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절차에서 어떠한 판결 또는 판정도 내려지지 않은 경우

3.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9.22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비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또는 달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사무차장이 임명을 하도록 요청된다.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나. 제9.19조제1항에 언급된 청구인은 다른 분쟁당사자의 국민을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9.23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2.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3.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부속서 9-바(외부조언자)에 따라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4.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9.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 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내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 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0 조에 언급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 5 항에 규정된 신속절차를 이용하였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45일 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않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요청일 후 150일 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30일을 추가로 소요할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7. 피청구국은, 제9.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항변, 반소 또는 상계권으로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8.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9.19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9.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날 후 60일 내에, 분쟁당사자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 후 45일 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린다.

나. 가호는 제10항 또는 부속서 9-다에 따라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중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 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소기구가 재심리하도록 하는 합의를 교섭할 수 있다.

제9.24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9.23조제2항, 제9.23조제3항 및 제9.28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로 개최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가 대중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1.2조(필수적 안보) 또는 제21.4조(정보의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분쟁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 제공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9.25조
준거법

1. 제4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제기될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중재판정부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다자간 지식재산 조약에 따른 조치의 합법성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4.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제9.26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항목의 범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내에 제19.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해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7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9.28조
병합

1. 제9.1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그 요청이 명백히 근거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 명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내에 피청구국 또는 청구인들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으로 포함하려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않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9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 9.22 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 4 항가호 및 제 5 항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9.19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인은 제6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10.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명령할 수 있다.

제 9.29 조
판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4.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5. 제6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6.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 9.19 조제 4 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8.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0.7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제 20.11 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 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9.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8항에 따라 취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0.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30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9-나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달된다.

제3절
정의

제9.3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자 간 투자 조약이란 1999년 2월 7일 예루살렘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말한다.

청구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 어느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제1.7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다만, 투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식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이와 유사한 권리,[8] 그리고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9]

투자와 관련된 이 장의 규정들은 투자 수익의 재투자에 적용되며, 그 재투자가 원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재투자는 원래의 투자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투자 형태의 변경 또는 재투자 형태의 변경이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은 이 장의 의미에서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10]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양 당사국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법령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 및 그 법과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

[8] "투자" 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 있는 명령 또는 판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10] 이스라엘의 경우, 자연인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

보호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란 이 장에 따른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배당금, 이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 청산을 통하여 받은 금액, 이자, 자본수익,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또는 양 당사국 간에 추후 합의되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부속서 9-가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11]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11]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12]

나.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13]

[12]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과 같은 불균형적인 부담을 투자자 또는 투자가 지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않다.

부속서 9-나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한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한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또는 그 승계기관

이스라엘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이스라엘에 송달된다.

Chief Economist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Quarter, Jerusalem
Israel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9-다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9.29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9-라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가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부속서 9-마

송금

1. 이 장 또는 제10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관련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려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할 것이다.

나. 몰수적이지 않다.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라. 모든 규제 자산[14]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않는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규제 자산"이라는 용어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사.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에 규정된 유보목록을 조건으로, 제 9.3 조·제 10.2 조(내국민 대우) 및 제 9.4 조·제 10.3 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자.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한다. 그리고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15]

[15] **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30조(d)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부속서 9-바
외부조언자

중재판정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의 자연인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외부조언자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그 의견서는

   가.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표자에 의하여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되며, 그러한 인의 연락정보를 포함한다.

   나. 모든 분쟁당사자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를 공개하고 그 서면입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할 모든 인, 정부 또는 그 밖의 실체를 기재한다.

   다. 의장에게 보내지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하여 선정된 언어나 언어들로 분쟁당사자들에게 또한 전달된다. 그리고

   라.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 쪽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그 의견서는 다음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서면 선언을 수반한다.

   가. 법인의 경우 그 설립지, 그리고 자연인의 경우 주소, 활동의 성격, 자금조달의 출처, 그리고 적절한 경우, 앞서 언급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명

   나. 이해관계인이 일반적으로 또는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분쟁당사자, 다른 정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인 또는 그 밖의 유형의 기여를 받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중재판정부가 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정을 할 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

3. 중재판정부는 상기 규칙에 합치하지 않는 외부조언자 의견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부속서 9-사
중재 청구 제기

한국

1. 제9.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투자자가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에 따른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후에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